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3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영규 과장(044-203-5321), 김혜원 사무관(5349)

원전산업의 안전 · 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「원전감독법」 7.1일부터 시행

- **원전의 안전·투명한 건설·운영을 위한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의무사항 규정**
- **협력업체 위반행위시 입찰제한(최소 1개월~최대 3년) 및 과징금, 벌칙 부과**
- **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협력업체 대상 계도기간 운영 계획**

□ 원전의 안전·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**원전공공기관*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**한 **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원전감독법)이 7월 1일부터 시행**한다.

*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: 한수원, 한전,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(5개 기관)

□ 그동안 **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·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**을 위해 **정부 종합대책, 비정상의 정상화*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** 등을 통해 **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**해왔다.

* 「비정상의 정상화」 과제로 '공공부문 개혁-원전비리 근절' 과제 추진중

○ **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**을 위한 **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**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**「원전감독법」을 작년 12월에 제정했다.**

○ 이 법이 **7.1일부터 시행**됨에 따라 **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**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**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·감독**을 **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**하기로 했다.

□ **「원전감독법」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, 산업부의 관리·감독 사항을 규정**하고 있다. <별첨3>

① 원전공공기관의 안전·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

- **(안전·투명 경영)** 구매·계약, 조직·인사 및 시설관리, 국민소통·협업 등
- **(윤리의무)** 임직원 재산등록·취업제한, 부당한 정보제공·이용금지,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
- **(운영계획 제출)**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,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
- **(제재조치)** 사익·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(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,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,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

②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

- **(행위제한)** 뇌물공여,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·이용, 성능증명 문서 위·변조,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, 담합, 불법하도급, 사이버침해 등
- **(제재조치)**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(1개월~3년)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·해지, 과징금 및 벌칙(징역, 벌금)

③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·감독

- **(이행감독)**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·운영계획의 이행,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·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
- **(시정조치 등)**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未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, 시정요구 未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·요구 등

□ **「원전감독법」은**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, 납품비리 등 **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**을 미치는 것은 물론 **국민의 불편·불안을 초래**한 점 등을 감안해,

○ 현재 **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**에 적용되는 **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·과징금** 및 **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** 등 **강도 높은 제재조치**를 담고 있다. <별첨1 ③>

※ 협력업체 입찰제한의 경우 **「국가계약법」(1개월~2년) 대비 제재기간이 강화(1개월~3년)**되고, **입찰제한·과징금·벌칙의 병과 가능**

- 특히, **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·변조 등 행위시** 원전공공기관에 **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**하고, **과징금, 벌칙이 부과**한다.

※ (예)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 「원전감독법」상 제재

· **입찰제한** : (1차위반) 2년, (2차위반) 2년6개월, (3차이상 위반) 3년
*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 등에 따라 1/2 범위에서 가중·감경 처분 가능
(「국가계약법」상 '입찰서류 위·변조 및 허위서류 낙찰자'에 대한 입찰제한 1년 대비 제재기간 강화)

· **과징금** : 관련 매출액(위반행위로 얻은 이익)의 10/100 이내

· **벌칙** 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○ **원전공공기관**에 대해서도 **사안에 따라 기관장·상임이사의 해임 건의·요구, 임직원에 대한 형벌(징역, 벌금)** 등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※ 「원전감독법」상 **원전공공기관 임직원**에 대한 주요 제재사항

관련 법 조항	행위제한	제재 사항
제15조제2항	임직원 재산등록·취업제한	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라 제재(**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**)
제17조제3항	영리업무 겸직, 관련 사기업 투자금지	**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**
제25조제2항	산업부의 시정조치 요구의 未이행	**산업부는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·요구**
제29조 및 제31조	형법상 뇌물죄(제129조~제133조)	**·공무원 의제**(형법 제129조~제132조) **·형법상 형벌의 1/2까지 가중처벌** 및 **수뢰액의 5배~10배 벌금 병과** 가능
제30조제2항 제1호	사익·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	**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**

□ 앞으로 **산업부는 법령에 따라**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**운영계획 등을 제출**받아 **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·감독**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아울러,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**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**할 수 있도록 **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**하기로 했다. <별첨2>

○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**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**하고 **안내서 등을 배포**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,

○ **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**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, **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·집행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**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**을 통해 **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**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.

※ 붙임

[별첨1] 「원전감독법」 관련 문답자료
[별첨2] 「원전감독법」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
[별첨3] 「원전감독법」 및 시행령 주요내용
[별첨4] 「원전감독법」 및 시행령, 고시 전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혜원 사무관(☎ 044-203-53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1 「원전감독법」 관련 문답자료

①「원전감독법」 시행으로 강화된 협력업체 제재사항은?

□ 협력업체가 **「원전감독법」 제18조의 행위제한 행위**를 할 경우,

○ '15.7.1일부터는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라 **입찰제한**(1개월~3년, 「국가계약법 1개월~2년 대비 강화), **과징금, 벌칙 등 제재가 부과됨**

○ 특히, 「국가계약법」에서는 사안에 따라 입찰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, 「원전감독법」은 입찰제한·과징금·벌칙 모두 병과 가능

< 협력업체 행위제한(「원전감독법」 제18조)에 따른 제재사항 >

행위제한	「국가계약법」	「원전감독법」		
	입찰제한	입찰제한	과징금 상한액*	벌칙
가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**뇌물을 약속, 공여**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	3개월~2년	1개월~**3년** ·「국가계약법」상 제재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	-
나. 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*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·운영에 관한 **정보를 취득하여 이용**한 경우	-	**2년~3년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	**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**
다.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**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**한 경우	1년	**2년~3년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	**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**
라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**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**한 경우	-	**2년~3년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	-
마.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**가격, 품질, 물량,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**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	6개월~2년	6개월~**3년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	-
바. 「건설산업기본법」·「전기공사업법」·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**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**(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)**하여 하도급**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	4개월~8개월	4개월~**1년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**	-
사.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**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**의 발생으로 **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**를 입힌 경우	1개월, 3개월 (누출횟수에 따라)	**5개월~7개월**	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**	-

*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(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

②「원전감독법」 위반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

(예시) 한수원 협력업체 A社가 **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·변조**하여 한수원에 납품한 경우('15.7.1일 이후 위·변조 행위 발생 기준)

① **한수원**은 협력업체 입찰제한과 관련한 내부 절차를 거쳐 「원전감독법」 및 「국가계약법」에 따라 입찰제한을 부과*하고,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·해지

- 한수원은 입찰을 제한한 A社의 정보를 他 원전공공기관(한전,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)에 통보하고, **他 원전공공기관**도 A社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·해지

* **협력업체가 「원전감독법」상 입찰제한 2년과 「국가계약법」상 입찰제한 1년을 부과받을 경우**, 제재기간 처음 1년간 「원전감독법」과 「국가계약법」을 동시에 적용받고, 이후 1년간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라 원전공공기관 5개社에 입찰제한

	제재기간		입찰제한 범위
「원전감독법」	1년	1년	원전공공기관(한수원, 한전,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)
「국가계약법」	1년	제재해제	국가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*

*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 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 등에 따른 기관의 입찰 제한

② **산업부**는 한수원으로부터 A社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아 A社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 과징금 집행

* 과징금 : 관련매출액(위반행위로 얻은 직·간접적 이득)의 10/100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③ **사법기관**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능 증명 문서를 위·변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(「원전감독법」 제30조제1항)

③ 계도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?

□ 「원전감독법」 시행에 따라 협력업체 제재가 강화되어,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**계도기간('15.7.1일~'15.12.31일)을 설정하여 운영**함(<별첨2> 참조)

○ 계도기간 중 <별첨2>에 따라 기존에 「국가계약법」으로 제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경우 우선 경고조치하고, 재위반시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라 제재조치 할 계획임

○ 다만, <별첨2>의 계도대상 행위라고 할지라도 ① 또는 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없이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라 제재하고,

① 고의·중과실 행위

② '15.7.1일 이후 원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*

* 「원전감독법」 시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도대상에서 제외

○ <별첨2>의 계도대상 행위 중 '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·변조행위'가 「국가계약법」상 '입찰서류 위·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'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대로 「국가계약법」에 따라 제재

○ 아울러,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입찰제한·과징금만 해당되고 벌칙(징역, 벌금)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

□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외에도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, 법령 설명서 배포(원전공공기관 홈페이지, 책자 등) 등을 통해 협력업체가 법령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임

별첨2 「원전감독법」 시행 관련 협력업체 대상 계도기간 운영계획

□ **(필요성)** 「원전감독법」 및 시행령·고시가 '15.7.1일 시행되고 협력업체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, **법령 이행을 위한 원전공공기관 내규 정비** 및 **협력업체 안내·준비** 등 **제도 연착륙을 위해 준비기간 필요**

※ 계도기간 운영사례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('11.9), 「정보통신망법」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('12.8),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('14.8) 등

□ **(계도기간 운영)** 일정기간 동안 특정위반은 **처벌보다는 지도·안내**

○ **(운영기간) 2015.7.1.(수) ~ 2015.12.31.(목) (6개월)**

○ **(운영주체)** 산업부, 원전공공기관

○ **(대상) 협력업체**(물품·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)

※ **단 '15.7.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고의·중과실 등은 제외**

○ **(처분기준)** 1차 **경고**, 2차 **제재처분**(입찰제한·과징금만 해당하고, 벌칙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음)

○ **(계도대상 행위)** 기존에 「국가계약법」 등으로 제재하지 않았던 위반행위

※ **단, 성능문서 위변조 행위**의 경우 **「국가계약법」상 입찰서류 위·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**에 해당시 현행대로 **「국가계약법」으로 제재**

※ **현재 「국가계약법」으로도 제재중인 非계도대상 행위**는 **경고 없이 제재**

< 계도대상 협력업체 위반행위 >

근거조항	협력업체 위반행위	법령상 제재기준			
		입찰제한 기준(위반횟수)			과징금 상한액
		1차	2차	3차이상	
법 제18조 제1항제1호	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	1개월	1개월	2개월	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
법 제18조 제1항제2호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·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	2년	2년6개월	3년	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
법 제18조 제1항제3호	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	2년	2년6개월	3년	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
법 제18조 제1항제4호	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	2년	2년6개월	3년	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
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8조 제3호	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 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	5개월	6개월	7개월	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

별첨3 「원전감독법」 및 시행령 주요 내용

「원전감독법」 주요내용

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안전·투명 경영의무 부과

< 안전·투명 경영의무 주요내용 >

- **(구매·계약)** 수의계약 최소화, 부정당 업체 제재, 구매정보 사전공개 강화 등
- **(조직·인사)** 주기적 조직 건전성 진단·개선,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
- **(설비관리)** 정비과정 투명성 확보, 정비업체 감독강화, 설비투자 계획 수립 등
- **(소통·참여)** 건설·운영 관련 정보공개, 주민참여제도 운영

* 설비관리는 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(한수원)만 적용

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

○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행위제한과 제재조치를 규정

< 주요 행위제한 및 제재 >

구 분	법률상 행위제한	벌 칙
원전 공공기관 종사자	·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·취업제한 적용	「공직자윤리법」적용 (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)
	· 사익·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	최대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등
	· 영리업무 겸직, 관련 협력체 투자 금지	징계의결 요구 의무화
	· 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처벌	형법의 1/2까지 가중처벌
협력업체	· 뇌물수뢰, 서류 위변조, 퇴직자 고용, 부정한 정보 취득·이용 금지	①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 ②과징금·가산금 ③형벌(징역, 벌금)

□ 안전·투명 경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·감독 규정

○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법률상 책무 준수 여부를 산업부가 관리·감독하고, 미흡시에는 시정·개선조치

* 관리·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·자료요구,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조정 요구, 시정 미이행시 인사조치·기관장 해임건의 요구 등 규정

○ 산업부는 이행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원안위에 통보

「원전감독법」 시행령 주요내용

□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정(안) 주요내용

○ **(관련사업자)** 한전 및 기타공공기관(해당기관은 고시에서 규정)*, 협력업체

* 해당기관: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연료

○ **(원전공공기관 의무)** 품질·시설관리,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명시, 공통의 경영목표·운영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규정

- **(품질·시설관리)** 품질문서 위·변조 검증, 원전시설 정비역량 제고, 사이버위협 보안계획 수립 등

- **(재산등록)**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원전공공기관 재산등록 의무자*를 동 시행령에 반영

*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연료 및 원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·한전KPS 조직의 2급 이상 직원

- **(이행계획 수립)** 안전·투명한 원전 건설·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공통의 경영목표·운영계획의 수립 절차·제출일 등 세부사항 규정

○ **(협력업체 제재)** 뇌물공여, 성능문서 위·변조,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침해·자료유출 등에 대한 입찰제한·과징금 등 기준 명시

- **(입찰제한)** 원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·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제한 가능

- **(과징금·가산금)** 위반행위 사안의 중요도 및 체납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설정

*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(위반행위로 얻은 이익)의 2/100~10/100 범위로 설정하고,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**(관리·감독)**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